

● **환경부훈령 제1666호**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.

2024년 10월 10일

환경부장관

**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**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(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, 살생물제, 정보공개, 피해구제)” 를 “(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, 살생물제, 정보공개)” 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운영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